

서울신학대학교 전도전략연구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기구는 서울신학대학교 전도전략연구소(Seoul Theological University Evangelism Strategy Institute) 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연구소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전통과 교리에 입각하여 기독교 교역자 및 지도자를 양성하는 복음주의 교육기관인 서울신학대학교의 산하기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따라 복음전도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에 맞게 실천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제3조 (사업) ① 매 학기 1차례 이상의 정기세미나를 통하여 현재 전도의 동향과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전도의 전략을 제시하도록 노력한다.

② 방학마다 선교지를 대상으로 "십자가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선교사들을 복음에 재무장시키며 타문화권에서 효율적인 복음전도의 동력을 제공한다.

③ 일년에 한차례씩 전도동력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전도의 동력을 제공하는 일을 한다.

④ 회원들을 중심으로 집중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도전략의 기획을 도모한다

제2장 조직

제4조 (임직원) 본 연구소의 임직원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장 1인
2. 운영위원 약간명
3. 연구위원 약간명
4. 간사 또는 조교 1명

제5조 (자격 및 임명) ① 소장은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운영위원은 소장의 요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며, 조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③ 조교는 본교 조교인사규정을 따른다.

제6조 (임기) 본 연구소의 모든 임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직무) ①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와 활동을 관장하며, 운영위원회 및 제반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전임연구위원은 소장의 지시를 따라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전임연구위원은 간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소장의 지시를 따라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 ④ 조교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및 연구위원회

제8조 (운영위원회 설치) ① 본 연구소는 연구소의 운영계획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하도록 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인원은 소장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한다.

-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연구소의 소장이 된다.

제9조 (임명) 연구소의 운영위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의결) 운영위원회의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도록 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연구위원회) ① 복음전도전략을 계획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둔다.

- ② 연구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위촉하도록 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연구소의 소장이 된다.

- ④ 본 연구위원은 복음전도전략을 연구하는 외부 연구소와 협력할 수 있다.

제4장 회원

제12조 (자격) 본 연구소의 회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을 따르고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자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13조 (권리) 회원은 연구소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14조 (회원종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교회, 선교단체)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제15조 (회원제명)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회원의 제명통고가 본 연구소에 도착한 날을 제명일로 한다.

1. 본 연구소의 명예를 중대하게 손상시킨 회원.
2. 본 연구소의 정해진 연회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으로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
3. 서면 상으로 탈퇴의사를 표명한 회원

제5장 재정

제16조 (재원)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서울신학대학교 연구 지원비

2. 외부 연구 지원비
3. 회비
4. 연구기금
5. 기타

제17조 (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8조 (승인) 매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집행하며, 소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칙

- ① (규약의 개정)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 ② (기타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신학대학교 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 ③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